



제428회국회(임시회)
제 2 차 정 무 위 원 회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다크패턴 규제 신설 〉

■ 김재섭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0734호)

2025. 8.

정 무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정명호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3

I. 제안경위

1. 제 안 자 : 김재섭의원 등 10인
2. 제 안 일 : 2025. 6. 11.
3. 회 부 일 : 2025. 6. 12.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가상자산사업자가 이용자를 기만하여 부당이익을 취득하거나 이용자의 자유로운 거래 의사결정을 방해하는 행위를 직접적으로 제한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 이로 인해 웹사이트 또는 앱을 교묘하게 설계하여 이용자를 유인하거나 혼동을 유발하는 방식으로 수수료를 과도하게 부과하거나 불리한 거래를 유도하는 이른바 ‘다크패턴’ 행위가 발생하더라도 이를 규율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음.

특히 최근 일부 가상자산거래소가 수수료 할인 적용을 어렵게 하거나 계약 해지 절차를 복잡하게 만들고, 청약 철회를 방해하는 방식으로 거래를 설계해 소비자 피해와 부당이익 취득이 현실화되고 있음.

또한 현행법상 위와 같은 행위에 대한 제재수단이 부재하거나 다른 조항을 적용하더라도 과태료나 처벌의 실효성이 낮아 사업자 입장에서 이익을 얻는 편이 오히려 ‘합리적인 전략’으로 인식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음.

이에 온라인 인터페이스를 교묘하게 설계해 이용자를 기만하거나

의사결정을 방해한 경우, 부당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에 상응하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여 불공정한 거래를 통한 이익 획득을 방지하고자 함(안 제12조의2 신설 등).

Ⅲ. 검토의견

- 개정안은 온라인 인터페이스(웹사이트 또는 모바일 앱 등)를 운영하는 가상자산사업자가 온라인 인터페이스를 교묘하게 설계하여 이용자를 기만하거나 의사결정을 방해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는 한편, 이를 위반한 경우에 대한 과징금, 형사처벌, 과태료 등 제재 근거를 신설하려는 것임(안 제12조의2 신설 등).

현행	개정안
<신설>	제12조의2(온라인 인터페이스 운영에 있어서 금지되는 행위) ① 가상자산사업자는 온라인 인터페이스(웹사이트 또는 모바일 앱 등의 소프트웨어로서 이용자와 가상자산사업자 사이의 매개체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운영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온라인 인터페이스에서 이용자에게 수수료, 이용료, 중개료 등 그 명칭이 무엇이든 가상자산 거래와 관련하여 가상자산사업자가 받는 대가 또는 가상자산의 가격, 시세 등을 알리는 표시·광고의 화면에서 이용자가 가상자산을 거래하기 위하여 필수적으로 지급하여야 하는 총금액(가상자산의 가격, 시세 외에 거래 서비스의 제공을 위하여

현행	개정안
	<u>필수적으로 수반되는 비용까지 포함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중 일부 금액만을 표시·광고하는 방법으로 이용자를 유인하거나 이용자와 거래하는 행위. 다만, 총금액을 표시·광고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고 그 사유를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용자에게 알린 경우는 제외한다.</u> <u>2. 가상자산의 매매, 교환, 이전, 그 밖의 거래(이하 “거래등”이라 한다), 회원가입, 계약체결 등이 진행되는 중에 이용자에게 다른 가상자산의 거래등, 회원가입, 계약체결 등에 관한 청약의사가 있는지 여부를 묻는 선택항목을 제공하는 경우 이용자가 직접 청약의사 여부를 선택하기 전에 미리 청약의사가 있다는 표시를 하여 선택항목을 제공하는 방법으로 이용자의 다른 가상자산의 거래에 관한 청약을 유인하는 행위</u> <u>3. 이용자에게 가상자산의 거래등이나, 회원가입, 계약체결 또는 이용취소, 회원탈퇴, 계약해지(이하 “이용등”이라 한다)에 관한 선택항목을 제시하는 경우 그 선택항목들 사이에 크기·모양·색깔 등 시각적으로 현저한 차이를 두어 표시하는 행위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u>

현행	개정안
	<u>나에 해당하는 경우</u> 가. <u>이용자가 특정 항목만을 선택할 수 있는 것처럼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행위</u> 나. <u>이용자가 이용등을 하기 위한 조건으로서 특정 항목을 반드시 선택하여야만 하는 것으로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행위</u> 4. <u>정당한 사유 없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이용자의 이용취소, 회원탈퇴, 계약해지 등을 방해하는 행위</u> 가. <u>가상자산의 거래등, 회원가입, 계약체결 등의 절차보다 그 취소, 탈퇴, 해지 등의 절차를 복잡하게 설계하는 방법</u> 나. <u>가상자산의 거래등, 회원가입, 계약체결 등의 방법과는 다른 방법으로만 그 취소, 탈퇴, 해지 등을 할 수 있도록 제한하는 방법</u> 5. <u>이용자가 이미 선택·결정한 내용에 관하여 그 선택·결정을 변경할 것을 팝업창 등을 통하여 반복적으로 요구하는 방법으로 이용자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방해하는 행위.</u> <u>다만, 그 선택·결정의 변경을 요구할 때 이용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동안 그러한 요구를 받지 아니하도록 선택할 수 있</u>

현행	개정안
	제한 경우는 제외한다. ②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해당하는 행위의 예방 및 이용자보호를 위하여 가상자산사업자의 자율적 준수를 유도하기 위한 지침을 관련 분야의 당사자, 기관 및 단체의 의견을 들어 정할 수 있다.
제17조(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과징금)	제17조(과징금) ① -----
① 금융위원회는 제10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미실현 이익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이로 인하여 회피한 손실액의 2배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그 위반행위와 관련된 거래로 얻은 이익 또는 이로 인하여 회피한 손실액이 없거나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40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제4항까지 또는 제12조의2제1항을-----
② ~ ⑤ (생략)	-----.
제19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3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다만,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이 없거나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 또는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5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5억원 이하인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19조(벌칙) ① ----- -----.

현행	개정안
경우에는 벌금의 상한액을 5억원으로 한다.	----- -----.
1. ~ 4. (생략)	1. ~ 4. (현행과 같음)
<신설>	5. 제12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제15조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통보받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② ~ ⑥ (생략)	② ~ ⑥ (현행과 같음)
제22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1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22조(과태료) ① ----- ----- -----.
1. ~ 7. (생략)	1. ~ 7. (현행과 같음)
<신설>	7의2. 제12조의2제1항 각 호의 금지행위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8. (생략)	8. (현행과 같음)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 “다크패턴”이란 온라인 시장에서 사업자의 이익을 위하여 소비자의 착각, 실수, 비합리적인 지출을 유도하는 상술을 의미함.¹⁾

○ 현행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상거래법”)」 제13조제6항 및 제21조의2제1항²⁾에서는 정당한 사유

1) 공정거래위원회, “온라인 다크패턴으로부터 소비자 보호를 위한 정책방향”, 2023. 4.

2)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신원 및 거래조건에 대한 정보의 제공) ⑥ 통신판매업자는 재화등의 정기결제 대금이 증액되거나 재화등이 무상으로 공급된 후 유료 정기결제로 전환되는 경우에는 그 증액 또는 전환이 이루어지기 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그 증액 또는 전환의 일시, 변동 전후의 가격 및 결제방법에 대하여 소비자의 동의를 받고, 증액 또는 전환을 취소하거나 해지하기 위한 조건·방법과 그 효과를 소비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제21조의2(온라인 인터페이스 운영에 있어서 금지되는 행위) ① 전자상거래를 하는 사업자 또는 통신판매업자는 온라인 인터페이스(웹사이트 또는 모바일 앱 등의 소프트웨어로서 소비자와 사업자 사이의 매개체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운영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없이 재화 등의 구입 총비용이 아닌 일부 금액만 표시·광고하는 행위(이하 “순차공개가격책정”), 특정 상품 구매과정에서 다른 상품의 구매 여부를 질문하면서 옵션을 미리 선택하는 행위(이하 “특정옵션 사전선택”), 선택항목의 크기·모양·색깔 등에 현저한 차이를 두어 사업자에게 유리한 특정 항목을 유인하는 행위(이하 “잘못된 계층구조”), 소비자의 취소·탈퇴 등을 방해하기 위하여 절차를 복잡하게 설계하는 행위(이하 “취소·탈퇴 방해”), 소비자가 이미 선택·결정한 내용을 변경하도록 팝업창 등을 통해 반복 요구하는 행위(이하 “반복간섭”), 소비자의 사전 동의 없이 정기결제 대금을 증액하거나 무료 서비스를 유료로 전환하는 행위(이하 “숨은갱신”) 등의 다크패턴을 금지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사이버몰을 통하여 소비자에게 재화등의 가격을 알리는 표시·광고의 첫 화면에서 소비자가 그 재화등을 구매·이용하기 위하여 필수적으로 지급하여야 하는 총금액(재화등의 가격 외에 재화등의 제공을 위하여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비용까지 포함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중 일부 금액만을 표시·광고하는 방법으로 소비자를 유인하거나 소비자와 거래하는 행위. 다만, 총금액을 표시·광고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고 그 사유를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비자에게 알린 경우는 제외한다.
2. 재화등의 구매·이용, 회원가입, 계약체결 등이 진행되는 중에 소비자에게 다른 재화등의 구매·이용, 회원가입, 계약체결 등에 관한 청약의사가 있는지 여부를 묻는 선택항목을 제공하는 경우 소비자가 직접 청약의사 여부를 선택하기 전에 미리 청약의사가 있다는 표시를 하여 선택항목을 제공하는 방법으로 소비자의 다른 재화등의 거래에 관한 청약을 유인하는 행위
3. 소비자에게 재화등의 구매·이용, 회원가입, 계약체결 또는 구매취소, 회원탈퇴, 계약해지(이하 “구매등”이라 한다)에 관한 선택항목을 제시하는 경우 그 선택항목들 사이에 크기·모양·색깔 등 시각적으로 현저한 차이를 두어 표시하는 행위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가. 소비자가 특정 항목만을 선택할 수 있는 것처럼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행위
 - 나. 소비자가 구매등을 하기 위한 조건으로서 특정 항목을 반드시 선택하여야만 하는 것으로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행위
4. 정당한 사유 없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소비자의 구매취소, 회원탈퇴, 계약해지 등을 방해하는 행위
 - 가. 재화등의 구매, 회원가입, 계약체결 등의 절차보다 그 취소, 탈퇴, 해지 등의 절차를 복잡하게 설계하는 방법
 - 나. 재화등의 구매, 회원가입, 계약체결 등의 방법과는 다른 방법으로만 그 취소, 탈퇴, 해지 등을 할 수 있도록 제한하는 방법
5. 소비자가 이미 선택·결정한 내용에 관하여 그 선택·결정을 변경할 것을 팝업창 등을 통하여 반복적으로 요구하는 방법으로 소비자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방해하는 행위. 다만, 그 선택·결정의 변경을 요구할 때 소비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동안 그러한 요구를 받지 아니하도록 선택할 수 있게 한 경우는 제외한다.

하고 있음.

□ 그런데, 현행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에는 다크패턴 행위를 금지하기 위한 근거가 미비하므로, 가상자산사업자가 다크패턴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이용자에게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음.

○ 참고로, 전자상거래, 통신판매 등에 의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정한 거래에 관한 사항을 규정³⁾하고 있는 「전자상거래법」은 가상자산 거래 등에는 적용이 되지 않음.

□ 이에 개정안은 「전자상거래법」과 유사한 방식으로 다크패턴 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한편, 이를 위반한 경우 과징금, 형사처벌, 과태료 등의 제재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이용자를 보호하려는 취지임.

○ 구체적으로, 개정안은 「전자상거래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순차공개가격책정, 특정옵션사전선택, 잘못된 계층구조, 취소·탈퇴방해, 반복간섭 등의 다크패턴 행위를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에서도 유사하게 규정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과징금, 형사처벌, 과태료 등의 수단을 통하여 제재하려는 내용을 담고 있음.

3)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전자상거래 및 통신판매 등에 의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정한 거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시장의 신뢰도를 높여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표1] 「전자상거래법」상 다크패턴 규율내용

조 문	주요 금지내용
§21의2①	① (순차공개가격책정) 정당한 사유 없이 재화등의 구입 총비용이 아닌 일부 금액만 표시·광고
	② (특정옵션사전선택) 특정 상품 구매과정에서 다른 상품 구매 여부를 질문 하면서 옵션을 미리 선택
	③ (잘못된 계층구조) 선택항목의 크기·모양·색깔 등에 현저한 차이를 두어 사업자에게 유리한 특정 항목 유인
	④ (취소·탈퇴방해) 소비자의 취소·탈퇴 등을 방해하기 위해 절차를 복잡하게 설계
	⑤ (반복간섭) 소비자가 이미 선택·결정한 내용을 변경하도록 팝업창 등을 통해 반복 요구
§13⑥	⑥ (숨은갱신) 소비자 사전 동의 없이 정기결제 대금 증액 또는 무료 서비스의 유료 전환

주: 붉은색 박스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개정안에서 신설하려는 다크패턴 유형임.

- 온라인으로 영업이 이루어지는 가상자산 거래의 특성을 고려할 때, 가상자산사업자의 다크패턴 행위를 통한 이용자 피해 발생 우려가 있어 가상자산 분야에서도 다크패턴 행위를 규율할 필요성이 인정되는바, 개정안의 입법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보임.

□ 다만, 개정안에 대하여 다음을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 첫째, 금융위원회는 전자상거래에 적용되는 다크패턴 규제를 가상자산 분야에 그대로 적용하는 개정안과 관련하여, 가상자산 분야에서의 다크패턴 유형 등에 대한 종합적인 조사·연구 이후 규제의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기하였음.
- 기업의 상술은 그 유형이 매우 다양하고, 유형·정도에 따라 ‘명백한 기만행위’부터 ‘일상적 마케팅’까지 스펙트럼이 매우 넓으며, 합법과 불법, 정상과 비정상의 경계에서 교묘히 이루어지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공정거래위원회는 기업의 정상적인 마케팅 활동을 위축시키지 않으면서 소비자에게 피해를 유발하는 정도가 큰 유형의 상술을 실효적으로 억제할 수 있도록 오랜 기간의 연구용역⁴⁾을 통하여 대응방안을 모색하였으며, 그 결과 다크패턴 유형을 크게 편취형⁵⁾·오도형⁶⁾·방해형⁷⁾·압박형⁸⁾ 상술 등의 4가지 유형과 19개 세부유형으로 분류⁹⁾하였음,

- 그러나, 금융위원회는 전자상거래 분야에서의 다크패턴의 유형 중 취소·탈퇴방해 유형을 제외한 유형들은 가상자산 분야와 관련성이 낮은 것으로 파악¹⁰⁾되므로, 가상자산 분야에서의 상술 유형에 대한 조사·연구가 필요하다는 입장임([표]2 참조).
- 참고로, 현행 「전자상거래법」은 가상자산뿐 아니라 금융분야에도 적용되지 않는데, 금융위원회는 디지털금융 확산에 따른 다크패턴 피해 우려로 인하여 다크패턴 가이드라인 마련을 추진 중임.¹¹⁾

4) 「전자상거래법」상 다크패턴 금지특칙 개정 경과: ① 연구용역(2022. 9.) → ② 다크패턴 종합 대책 발표(2023. 4.) → ③ 다크패턴 가이드라인 제정(2023. 7.)

5) 소비자의 비합리적인 지출, 또는 예상치 못한 지출을 유도하는 상술

6) 거짓을 알리거나 통상적인 기대와 전혀 다르게 화면·문장 등을 구성해 소비자의 착각이나 실수를 유도하는 상술

7) 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 수집·분석에 과도한 시간, 노력, 비용이 들게 만드는 상술

8) 소비자에게 심리적 압박을 가해 특정 행위를 하거나 하지 않도록 유도하는 상술

9) 공정거래위원회, “온라인 다크패턴으로부터 소비자 보호를 위한 정책방향”, 2023. 4.

10) 2025년 4월 빗썸이 쿠폰등록 시에만 적용되는 최저 수수료를 홍보한 사례의 경우는 가상자산 분야에서 변형된 상술 유형으로 파악하고 있음.

※참고: 2025. 4. 다크패턴 사례로 보도된 빗썸 사례(언론보도 참조)

- 빗썸은 업계 최저라 강조하며 거래 수수료가 0.04%임을 홍보하였으나, 해당 수수료를 적용 받기 위해서는 홈페이지 내에서 별도 쿠폰등록 절차 필요하였으며, 디지털 환경에 익숙하지 않은 중장년층은 쿠폰등록 절차를 하지 않아 평균 0.076%~ 0.078% 수준의 수수료가 적용

(자료: 금융위원회)

11) (연구용역) 비대면(온라인) 금융상품 판매과정에서 다크패턴 사용제한 가이드라인 연구(한국금융소비자보호재단, 2024. 4.~)

[표2] 「전자상거래법」상 다크패턴 유형과 가상자산 관련성

다크패턴 유형		가상자산 관련성
편취형	1. 숨은 갱신 : 무료 서비스를 유료로 전환 시 소비자 동의 없이 갱신	×
	2. 순차공개 가격책정 : 재화등의 구입 총비용이 아닌 일부 금액만 표시	×
	3. 몰래 장바구니 추가 : 선택하지 않은 상품을 장바구니에 몰래 끼워 넣는 행위	×
오도형	4. 거짓 할인 : 할인율이 낮거나, 없음에도 할인된 것처럼 표시하는 행위	×
	5. 거짓 추천 : 사업자에 불리한 이용후기 삭제, 유리한 이용후기 거짓 작성	×
	6. 유인 판매 : 실제 판매되지 않은 미끼상품을 판매중인 것으로 표시	×
	7. 위장 광고 : 광고행위를 광고가 아닌 다른 콘텐츠(후기 등)인 것처럼 위장	×
	8. 속임수 질문 : 소비자가 의도치 않은 선택을 하도록 속임수를 쓰는 질문	×
	9. 잘못된 계층구조 : 사업자에게 유리한 선택항목을 시각적으로 두드러지게 표시	×
	10. 특정옵션 사전선택 : 사업자에게 유리한 선택사항을 미리 선택해놓는 행위	×
방해형	11. 취소·탈퇴 방해 : 구매·가입 등의 절차보다 취소·탈퇴 등을 복잡하게 하는 행위	△
	12. 숨겨진 정보 : 상품 구매 결정에 필요한 중요정보를 누락·축소하는 행위	×
	13. 가격비교 방해 : 여러 상품의 가격, 판매조건의 비교를 어렵게 하는 행위	×
	14. 클릭 피로감 유발 : 유리한 선택·정보수집에 많은 클릭이 필요토록 유도하는 행위	×
압박형	15. 반복간섭 : 팝업창 등을 통해 소비자 선택 변경을 반복적으로 요구하는 행위	×
	16. 감정적 언어사용 : 감정 자극 언어 표현을 통해 특정 행동을 유도하는 행위	×
	17. 시간제한 알림 : 할인·혜택 제공에 시간제한 표시를 통한 소비자 압박 행위	×
	18. 재고없음, 높은 수요 알림 : 재고가 없거나, 수요가 높다는 표시를 통한 소비자 압박 행위	×
	19. 다른 소비자의 활동 알림 : 최근 구매한 소비자 수 표시 등을 통한 소비자 압박 행위	×

(자료: 금융위원회)

- 둘째, 개정안은 가상자산사업자의 다크패턴 행위에 대하여 과징금, 형사처벌, 과태료 등의 제재를 위한 법적근거를 신설하는 내용을 반영하고 있는바, 제재수준의 적정성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 개정안은 가상자산사업자가 이 법을 위반하여 다크패턴 행위를 한 경우 ① 부당이득액의 2배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안 제17조제1항), ② 1년 이하의 유기징역 또는 부당이득액의 3~5배 상당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며(안 제19조제1항), ③ 1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안 제22조제1항 제7호의2).
- 반면, 현행 「전자상거래법」은 ① 과징금의 경우 다크패턴 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 처분 근거가 없고, ② 형사처벌의 경우 먼저 시정조치를 명한 후, 그 명령의 미이행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¹²⁾하고 있으며, ③ 과태료의 경우 그 상한이 500만원 수준에 불과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동일한 위법행위에 대한 제재처분의 정도를 달리하는 것은 형평성 측면에서 적절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심사에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¹³⁾

12)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시정조치 등)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이 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자에게 그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다.

3. 제21조의2제1항 각 호의 금지행위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제4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32조제1항에 따른 시정조치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

13) 참고로, 다크패턴 행위를 한 사업자 등에 대하여 부당이득액에 상당하는 과징금(부당이득액이 없거나 산정이 곤란한 경우 10억원 이하의 과징금 부과)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025. 6.11. 김재섭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10705호)이 우리 위원회에 계류 중임.

[표3] 다크패턴 행위에 대한 제재수단 비교

	「전자상거래법」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개정안
과징금	-	○ 부당이득액의 2배 이하 - 부당이득액이 없거나 산정 곤란 시 40억원 이하
형사 처벌	○ 先 시정조치 ○ 시정조치에 따르지 않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 1년 이하의 유기징역 또는 부당이득액의 3~5배 벌금 - 부당이득액이 없거나 산정 곤란 시, 또는 부당이득액의 5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5배 이하인 경우 5억원 상한
과태료	○ 500만원 이하	○ 1억원 이하

문 의 처

02)6788-5111